

신남방

인도네시아 INDONESIA

2022년 한눈에 보이는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270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283
03. 비관세 장벽 현황	285
04. 수출 애로사항	294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296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식품시장 규모는 2,320억 9,800만 달러(한화 약 314조 6,553억 원)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모든 식품 품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1,037억 7,700만 달러(한화 약 140조 6,905억 원)로 집계됨
 - * 육류 시장이 29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39조 8,305억 원)로 신선식품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크며(12.7%), 채소류(12.2%), 낙농품(9.3%) 순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283억 2,100만 달러(한화 약 173조 9,648억 원)로 집계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시장 규모가 448억 9,000만 달러(한화 약 60조 8,574억 원)로 가장 규모가 크며, 스낵류 시장이 327억 7,000만 달러(한화 약 44조 4,263억 원), 영유아용 식품 시장이 173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3조 5,485억 원) 순으로 집계됨

식품시장 규모(2017~2021)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184,389.0	187,509.0	203,755.0	209,669.0	232,098.0	100.0	10.7
신선식품	82,256.0	83,699.0	91,002.0	93,705.0	103,777.0	44.7	10.7
- 육류	23,090.0	23,550.0	25,660.0	26,480.0	29,380.0	12.7	11.0
- 채소류	22,560.0	22,950.0	24,940.0	25,670.0	28,430.0	12.2	10.8
- 낙농품	17,130.0	17,410.0	18,910.0	19,450.0	21,520.0	9.3	10.6
- 과일 및 견과류	16,060.0	16,330.0	17,750.0	18,270.0	20,220.0	8.7	10.7
- 유지류	3,416.0	3,459.0	3,742.0	3,835.0	4,227.0	1.8	10.2
가공식품	102,133.0	103,810.0	112,753.0	115,964.0	128,321.0	55.3	10.7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36,010.0	36,530.0	39,600.0	40,650.0	44,890.0	19.3	10.4
- 스낵류	23,970.0	25,020.0	27,800.0	29,150.0	32,770.0	14.1	12.4
- 영유아용 식품	13,350.0	13,690.0	15,000.0	15,560.0	17,370.0	7.5	11.6
- 편의식품	12,250.0	12,400.0	13,410.0	13,730.0	15,130.0	6.5	10.2
- 스프레드 및 당류	10,820.0	10,360.0	10,650.0	10,420.0	11,040.0	4.8	6.0
- 소스 및 향신료	5,733.0	5,810.0	6,293.0	6,454.0	7,121.0	3.1	10.3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2억 7,380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함
 - 연령대 별 인구수는 균등한 편으로,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도 전체 인구의 약 24.3% 수준임
 - 여성 인구수는 1억 3,590만 명(약 49.6%), 남성 인구수는 1억 3,790만 명(50.4%)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음
- 2021년 가구수는 5,73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530달러(한화 약 342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0년 대비 9.6% 증가함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950달러(한화 약 129만 원)로 약 37.8%의 비중이며, 전년 대비 6.4% 증가함
-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839.84달러(한화 약 113만 8,571원)로 집계됨
 -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375.55달러(한화 약 50만 9,133원) 수준으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44.7% 차지하며, 전년 대비 9.6% 증가함
 - 가공식품 소비액은 총 464.29달러(한화 약 62만 9,438원)이며,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162.40달러(한화 약 22만 166원)로 가장 큰 비중(19.3%)을 차지함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96.80	700.52	752.83	766.60	839.84	100.0	9.6
신선식품	310.86	312.70	336.27	342.62	375.55	44.7	9.6
- 육류	87.26	87.99	94.81	96.83	106.30	12.7	9.8
- 채소류	85.25	85.72	92.16	93.86	102.90	12.3	9.6
- 낙농품 및 난류	64.74	65.05	69.88	71.12	77.88	9.3	9.5
- 과일 및 견과류	60.70	61.02	65.59	66.79	73.17	8.7	9.6
- 유지류	12.91	12.92	13.83	14.02	15.30	1.8	9.1
가공식품	385.94	387.82	416.56	423.98	464.29	55.3	9.5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36.10	136.50	146.30	148.60	162.40	19.3	9.3
- 스낵류	90.57	93.47	102.70	106.60	118.60	14.1	11.3
- 영유아용 식품	50.43	51.13	55.42	56.90	62.85	7.5	10.5
- 편의식품	46.30	46.32	49.55	50.20	54.74	6.5	9.0
- 스프레드 및 당류	40.88	38.69	39.34	38.08	39.93	4.8	4.9
- 소스 및 향신료	21.66	21.71	23.25	23.60	25.77	3.1	9.2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펠푸드 시장 규모 제외)

- 신선식품 주요 품목 중 1인당 소비량이 가장 큰 품목은 채소류로 총 73.89kg이며, 전년 대비 4.0%의 증가율을 보임

* 낙농품 소비량은 39.65kg, 과일 및 견과류 31.17kg, 육류 19.24kg, 유지류 2.76kg 수준으로 소비됨

- 가공식품 중에서는 2021년 1인당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이 126.12kg으로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뒤이어 스프레드 및 당류 21.97kg, 스낵류 16.99kg, 편의식품 12.90kg 순으로 집계되며, 스프레드 및 당류 외 가공식품 품목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65.80	67.51	69.52	71.02	73.89	4.0
	- 낙농품	38.38	38.12	38.27	38.73	39.65	2.4
	- 과일 및 견과류	28.06	28.59	29.26	29.97	31.17	4.0
	- 육류	16.24	16.93	17.73	18.31	19.24	5.1
	- 유지류	2.61	2.63	2.65	2.68	2.76	3.0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25.75	124.18	123.28	123.74	126.12	1.9
	- 스프레드 및 당류	25.80	24.51	23.47	22.46	21.97	△2.2
	- 스낵류	14.87	15.29	15.73	16.28	16.99	4.4
	- 편의식품	12.96	12.78	12.66	12.69	12.90	1.7
	- 영유아용 식품	9.52	9.50	9.53	9.66	9.95	3.0
	- 소스 및 향신료	8.37	8.26	8.20	8.21	8.35	1.7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농식품 수출액 458억 7,478만 6,000달러(한화 약 62조 1,924억 원)로 전년 대비 42.9% 증가한 규모로 집계
 - 말레이시아(18.6%), 동티모르(8.4%), 싱가포르(6.8%) 등으로 주로 수출되며, 대부분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음
 - *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액은 85억 5,050만 6,000달러(한화 약 11조 5,919억 원)로 전년 대비 70.4% 증가
 - * 동티모르로는 38억 4,699만 9,000달러(한화 약 5조 2,154억 원)를 수출하며 전년 대비 10.4% 증가
 - * 싱가포르로 수출액은 31억 2,908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2,421억 원)로 전년 대비 65.9% 증가
 -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3억 3,993만 5,000달러(한화 약 4,608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6.4% 증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33,119,400	30,824,634	28,004,247	32,101,169	45,874,786	100.0	42.9	8.5	
1	말레이시아	4,021,316	4,073,903	4,610,275	5,018,426	8,550,506	18.6	70.4	20.8
2	동티모르	5,295,555	4,001,955	2,705,725	3,485,220	3,846,999	8.4	10.4	△7.7
3	싱가포르	2,223,213	1,968,434	1,756,719	1,885,909	3,129,084	6.8	65.9	8.9
4	아랍에미리트	1,668,478	1,527,668	1,223,545	1,737,987	2,870,629	6.3	65.2	14.5
5	미국	1,742,264	1,877,450	1,748,938	1,927,373	2,726,381	5.9	41.5	11.8
6	독일	1,102,649	1,249,630	1,299,675	1,251,294	1,778,944	3.9	42.2	12.7
7	브루나이	763,982	874,476	709,809	989,991	1,501,120	3.3	51.6	18.4
8	네덜란드	900,382	905,874	760,486	768,367	1,471,001	3.2	91.4	13.1
9	방글라데시	1,660,931	1,517,359	1,147,053	1,138,296	1,390,925	3.0	22.2	△4.3
10	캄보디아	976,193	699,871	696,931	790,681	1,303,818	2.8	64.9	7.5
26	한국	172,701	227,512	198,210	319,599	339,935	0.7	6.4	18.4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 품목은 유지류 및 가공식품 위주인 것으로 나타남

- * 팜유 및 분획물 수출액은 239억 7,154만 8,000달러(한화 약 32조 4,982억 원)로 전년 대비 89.9% 증가하였으며 전체 52.3% 비중 차지
- * 팜유(조유) 수출액은 26억 9,357만 9,000달러(한화 약 3조 6,517억 원)로 전년 대비 43.2% 감소
- * 뒤이어 아자유와 그 분획물 기타 수출액 18억 5,088만 9,000달러(한화 약 2조 5,093억 원), 동식물성 유지 및 분획물 조제품이 15억 2,185만 달러(한화 약 2조 632억 원) 수출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33,119,400	30,824,634	28,004,247	32,101,169	45,874,786	100.0	42.9	8.5	
1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외 기타)	13,814,800	12,951,023	11,006,386	12,621,245	23,971,548	52.3	89.9	14.8
2	팜유 (조유)	4,698,225	3,576,825	3,626,674	4,743,567	2,693,579	5.9	△43.2	△13.0
3	아자유와 그 분획물 기타	1,831,770	1,368,561	863,214	1,087,297	1,850,889	4.0	70.2	0.3
4	동·식물성유지 및 분획물 조제품 (기타/마가린, 이미테이션 라드, 쇼트닝 제외) *기타 유지가공품	827,740	777,007	660,423	770,420	1,521,850	3.3	97.5	16.4
5	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박류	442,879	607,117	562,701	664,603	1,153,687	2.5	73.6	27.0
6	커피 (볶지 않은 것/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1,175,544	808,735	872,355	809,164	842,521	1.8	4.1	△8.0
7	기타 식물성유지	315,668	283,343	250,871	288,508	838,065	1.8	190.5	27.6
8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681,062	824,048	724,605	790,990	668,824	1.5	△15.4	△0.5
9	조제품 기타	381,913	421,650	390,088	489,466	602,094	1.3	23.0	12.1
10	아자유, 분획물 (조유, 정제유 이외 기타)	456,991	368,117	255,131	309,409	538,944	1.2	74.2	4.2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231억 1,108만 8,000달러(한화 약 31조 3,317억 원)로 전년 대비 25.9% 증가함
 - 호주산이 전체 1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중국산(13.0%), 미국산(13.0%)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 * 호주산 수입액은 34억 2,201만 8,000달러(한화 약 4조 6,392억 원)로 전년 대비 94.6%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1%의 성장세 기록
 - * 중국산 수입액은 30억 1,512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876억 원)로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기록
 - * 미국산 수입액은 30억 450만 1,000달러(한화 약 4조 732억 원)로 연평균 3.1%의 성장률을 기록
 - 한국산 수입액은 1억 7,564만 2,000달러(한화 약 2,381억 원)로 전체 0.8% 차지하며, 2017년 이후 연평균 6.9% 증가율을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7,676,168	19,722,480	18,505,011	18,362,235	23,111,088	100.0	25.9	6.9
1 호주	2,701,898	2,280,693	1,809,893	1,758,784	3,422,018	14.8	94.6	6.1
2 중국	2,475,008	2,707,481	2,713,166	2,735,665	3,015,124	13.0	10.2	5.1
3 미국	2,658,598	2,690,780	2,673,828	2,689,686	3,004,501	13.0	11.7	3.1
4 인도	672,200	958,458	825,654	1,046,339	2,173,538	9.4	107.7	34.1
5 아르헨티나	1,107,011	1,327,947	1,733,743	1,695,343	1,947,073	8.4	14.8	15.2
6 브라질	1,215,093	1,018,973	937,512	1,716,846	1,789,853	7.7	4.3	10.2
7 태국	1,705,763	2,367,110	1,784,588	1,188,961	1,027,485	4.4	△13.6	△11.9
8 우크라이나	429,081	604,360	730,467	731,594	962,381	4.2	31.5	22.4
9 캐나다	524,642	630,547	791,873	768,813	830,603	3.6	8.0	12.2
10 뉴질랜드	494,981	504,699	514,802	557,240	696,197	3.0	24.9	8.9
18 한국	134,315	148,236	150,567	142,583	175,642	0.8	23.2	6.9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밀과 메슬린, 대두박, 기타 사탕수수당 등

* 기타 밀과 메슬린 수입액은 35억 4,835만 6,000달러(한화 약 4조 8,105억 원)로 전년 대비 35.6% 증가

* 대두박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8.2% 증가한 26억 7,942만 9,000달러(한화 약 3조 6,325억 원)로 집계

* 기타 사탕수수당 수입액은 전년 대비 23.0% 증가한 22억 2,989만 달러(한화 약 3조 231억 원)로 집계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7,676,168	19,722,480	18,505,011	18,362,235	23,111,088	100.0	25.9	6.9	
1	메슬린 외 기타 (기타)	2,637,300	2,559,945	2,799,260	2,616,036	3,548,356	15.4	35.6	7.7
2	대두박 *박류	1,641,738	2,033,447	1,658,749	1,938,225	2,679,429	11.6	38.2	13.0
3	기타 사탕수수당 (편광도수 98.5도 초과)	2,017,962	1,746,299	1,317,596	1,813,552	2,229,890	9.6	23.0	2.5
4	대두 기타	1,150,766	1,102,749	1,064,565	1,003,421	1,482,849	6.4	47.8	6.5
5	마늘 (기타)	583,300	497,259	529,965	585,785	665,818	2.9	13.7	3.4
6	쇠고기 (냉동/뼈 없는 것)	387,918	523,324	600,223	507,771	664,811	2.9	30.9	14.4
7	조제품 기타	418,540	500,880	492,781	495,038	629,522	2.7	27.2	10.7
8	코코아 두 (볶은 것)	486,544	528,742	532,131	505,495	616,927	2.7	22.0	6.1
9	탈지분유 외 기타 (농축/설탕 및 감미료 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343,746	319,012	441,747	541,583	595,576	2.6	10.0	14.7
10	순종 사육 이외 생우	515,774	564,010	584,595	428,107	528,111	2.3	23.4	0.6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종자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현황

- 한국산 농식품 수출액 2억 4,353만 7,200달러(한화 약 3,302억 원)로 전년 대비 36.0% 증가함
 - 전체 수출액 비중의 81.5%는 농산물이 차지하며, 임산물, 축산물 순으로 뒤따름
 - * 농산물 수출액 전년 대비 32.9% 증가한 1억 9,840만 3,300달러(한화 약 2,690억 원)로 집계
 - 수출 상위품목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커피크리머, 조제품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등이 수출됨
 - * 커피크리머 수출액은 4,923만 500달러(한화 약 667억 원)로 전년 대비 46.1% 증가
 - * 기타 조제품 수출액은 1,427만 200달러(한화 약 193억 원)로 전년 대비 54.3% 증가
 -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는 전년 대비 74.6%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라면은 전년 대비 2.9%의 감소율을 보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규모(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76,151.20	204,970.80	169,741.20	179,097.70	243,537.20	100.0	36.0	8.4
농산물	146,428.90	174,387.50	149,843.50	149,237.20	198,403.30	81.5	32.9	7.9
축산물	4,358.30	4,819.40	11,171.40	7,757.20	9,514.30	3.9	22.7	21.6
임산물	25,364.00	25,763.90	8,726.30	22,103.30	35,619.60	14.6	61.2	8.9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76,151.20	204,970.80	169,741.20	179,097.70	243,537.20	100.0	36.0	8.4
1 커피크리머	18,947.90	41,264.10	36,832.50	33,691.50	49,230.50	20.2	46.1	27.0
2 조제품기타	19,078.40	8,428.60	5,959.50	9,247.50	14,270.20	5.9	54.3	△7.0
3 알코올 미함유 음료	6,247.70	19,337.10	8,163.00	7,913.90	13,815.80	5.7	74.6	21.9
4 라면	14,471.10	18,157.20	21,893.80	11,998.10	11,645.90	4.8	△2.9	△5.3
5 조제식료품 기타 (쌀가루의 것)	2,084.00	885.60	785.30	3,522.10	5,454.40	2.2	54.9	27.2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연초 등은 제외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통관 절차상 특징

- 인도네시아는 통상적인 '선 신고 후 심사'와는 대조적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이 통관 절차상 특징임
-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선 통관 사후 심사(Post Auditing)'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격적인 심사는 통관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통관 후 물품 인수까지 마쳤더라도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는 의미는 아님
- 지역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완료된 제품의 수입 신고서는 관할 본부 세관으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신고 내용이 재검토되며, 문제 발생 시 수입업체 심사를 진행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수입업체는 통관 당시의 수입신고서 및 기타 선적서류들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함

• Step 1 : 서류 준비

- 인도네시아는 통상적인 '선 신고 후 심사'와는 대조적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이 통관 절차상 특징임
- 무역면허(SIUP)
 - * 인도네시아에서 교역활동을 수행하려는 기업체는 무역면허(SIUP)를 등록해야 함
 - * 무역면허에는 회사의 활동 및 대표자 정보 등을 기입해야 함
- 사업자 등록번호(NIB)
 - * 2018년 7월부터 수입허가 간소화를 위해 수입허가(API), 관세청 등록번호(NIK)를 통합하여 사업자 등록번호(NIB)로 일원화함
 - *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은 온라인 인허가 통합시스템 웹사이트(<http://oss.go.id>)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함
 -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인들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사업자 등록번호 취득 대상에 포함됨
 - * 사업자 등록번호 취득을 위해서는 사업 당사자가 OSS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회사 설립 증서 번호, 각종 허가 사항에 대한 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함
 - *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 시 투자자들은 납세자 고유번호(NPWP) 취득이 필요하며, 납세자 고유번호 또한 OSS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과 발급이 가능함
 - * 사업자 등록번호와 관련된 절차가 완료되면 투자자들에게 13자리의 번호가 발급됨
- 납세자 번호(NPWP)
 - * 납세자 번호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함
- 특정제품 수입 등록서(ITPT)
 - * 특정 제품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사전에 수입허가를 취득 및 산업부에 등록허가를 받아야 함
 - * 수입 규제 품목은 식음료, 의류, 신발, 전자제품, 완구, 전통 의약품, 허브, 화장품임

- Step 2 : 도착 전
 -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에 도착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현지 관세청에 운송수단이 도착 예정임을 통보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알려야 함
 - * 운송사 상호, 선박 편, 항공 편 등의 운송수단 식별번호, 운송수단 명칭, 출발항,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도착 직전 최종 기착지, 목적항, 운송수단 도착예정일, 하역 예정의 포장 개수, 컨테이너 개수 혹은 벌크 제품의 개수,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내의 다음 목적항

- Step 3 : 도착 시
 - 운송수단이 관세항구에 도착했을 시 수입업자는 선적 화물 및 부속 화물을 포함하여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세관신고서는 영어 또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며, 선박 편은 도착 후 24시간 이내, 항공 편은 도착 후 8시간 이내, 육로 편은 도착 후 즉시 제출해야 함
 - 세관신고서 작성 시 운송수단 승객 및 승무원 명단, 운송수단 연료 및 식량 공급 계획, 운송수단 적재 계획, 총기류 목록, 마약류를 포함한 치료용 의약품 목록이 포함되어야 함

- Step 4 : 하역
 - 수입된 물품은 검사 책임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 하에 세관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하역해야 함
 - 운송사는 12시간 이내에 하역된 컨테이너 혹은 벌크 수량의 목록을 수기 또는 전자목록 형태로 세관에 제출함

- Step 5 : 수입관세 및 제세 납부
 -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외국환 은행이나 세관을 통해 관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제세를 납부해야 함
 - 판중 프리옥 항구와 수카르노 하타 공항 등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자신고방식(EDI) 시스템이 잘 구축된 곳에서는 전자방식으로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할 수 있음

- Step 6 : 수입신고서 제출
 - 통관 세관의 수입신고 방식(EDI, 전자서류, 서류)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제출함
 - 인도네시아 주요 세관인 판중 프리옥 I, II, III 세관과 수카르노 하타 I, II 세관은 수입신고를 전자신고방식(EDI)으로 제출하며, 기타 세관의 경우 서류 또는 저장매체(USB, CD 등)를 이용하여 제출함
 - 세관은 제출 또는 전송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입 세금이 납부된 은행과 연락하여 수입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함. 수입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세관에서 수입신고서를 접수하며, 수입신고서 접수가 확인되면 원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함

- 선적 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등)는 세관내규에 따라 원본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4시간 이내에 수입신고서 접수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어느 반출 통로(Channel of Release)로 지정되었는지 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음. 만약 세관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통지서에 그 사유가 명시됨
- 세관은 세관 내부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마켓 판매가, 시장가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가격을 확인하고 통상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해당 신고가격을 불인정함

• Step 7 : 서류 심사 및 실물 검사

- 수입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관세청 직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 선적 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화물인도 지시서 등), 수입관세 및 제세납부 증거자료 등 첨부문서를 검토하고, 검토 후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물품의 실물 검사가 따를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세관은 과거 수입자의 정보, 수입자의 법규준수도, 신용도, 수입물품과 기타 정보의 위험도 따라 등급을 정해 통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음
- 통관 행정 서비스는 적색 채널(Red Channel, 고위험), 황색 채널(Yellow Channel, 위험), 녹색 채널(Green Channel, 우수), 최우수 채널(MITA Channel, 최우수) 4가지 채널로 구분되며 채널에 따라 물품 검사를 진행함
-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 세관 통관을 허락하고 화물 출고 동의서가 발급됨
- 화물 출고 동의서를 물품 창고에 제출 후 창고 비용을 지불하면 물품 반출이 가능함

• Step 8 : 물품 인도

- 관세청의 승인을 득한 후 수입물품이 인도되며, 물품의 인도시점은 화물 대기 순서 분류에 따름

• Step 9 : 물품 인수

- 수입된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최장 2개월 동안 항구의 임시창고 혹은 노상장소에 보관될 수 있지만 지정기간 내 통관 허가를 받지 못한 물품은 소유권이 세관으로 이관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이내에 통관 허가를 받지 못한 물품은 소유권자가 없는 물품으로 구분되어 세관이 폐기, 제거, 재수출, 경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음

- 수입물품 통관 시, 수입신고서(PIB)를 포함해 다음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수입신고서(PIB) : 신고자 이름과 주소, 수출자 이름과 주소, 수입자 이름과 주소, 운송수단 명칭, 물품가격 정보 포함
 -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보험증서
 - 수입허가

검역제도

- 인도네시아 법안 “No.16(1992)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관련”은 수생종을 포함한 동물 및 식물의 수출입 및 이전과 관련된 검역 요구조건을 정의함.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 검역부문의 최상위 법안임. 동 법안의 시행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검역제도 및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장관규정 및 결의, 소관부서 결정사항 등을 계속 발표하고 있음
 - 농림부 산하 인도네시아 검역청(IAAQ)은 검역제도의 중심 집행기구임. 해양수산부는 산하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해 수산 제품을 규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 등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신선과일 및 채소는, 이전에는 8개의 관세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반입할 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4개의 관세항구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함

● 검역 시 제출서류

- 요구되는 서류는 수입되는 제품의 유형에 따라 다름. 일부 서류양식 및 요구서류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역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 운송수단/목재포장재/PSAT 확인서
 - * 식물검역시행절차/안전감독/PSAT 승인서
 - * 화물하역 승인서
 - * 훈증 증명서
 - * 소독 증명서
 - * 식물 검역 증명서
 - * 운송수단 도착 보고서
 - * 원산지 및 경유지 국가의 건강 증명서

● 검역절차

번호	순서	내용
1	검사	인가된 기관에서 요구서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역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
2	격리	장기간, 특수시설, 제어된 환경조건 등을 요구하는 검역대상 제품은 격리될 수 있음
3	관찰	격리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 관찰이 진행됨
4	처리	<p>검역대상의 제품은 아래의 경우에 처리가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오염(감염) 또는 오염(감염)으로 의심이 갈 경우 -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심이 갈 경우
5	역류	인도네시아의 수입 요구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대상 제품은 역류됨.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규정 충족을 위해 허용되는 기간을 명시
6	거부	<p>아래의 경우, 제품은 거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결과, 검역대상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혹은 질병에 오염 또는 감염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어 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 요구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 역류 조치 이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운송수단 내에서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7	폐기	<p>아래의 경우, 제품은 폐기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이 되고, 후속적인 검사에서 제품이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감염이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 입국 거부 이후에, 지정된 기간 이내에 소유주가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 영외 또는 목적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을 경우 - 격리 후 관찰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의 오염/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 - 운송수단에서 하역 후 추가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8	인도	제품이 오염 혹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경우 제품 인도가 되며 수입업자가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인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 없이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콩, 감자
- 과일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유자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당근, 딸기, 멜론, 참외,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양파, 오이, 마늘쫑, 도라지, 호박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느타리, 송이, 새송이, 표고, 팽이
- 화훼류 : 선인장묘, 채송화묘, 다육식물, 스테비아 묘

* 주요 신선·건조농산물 중 수출금지 품목 없음(탄중프럭 옥 항 제외)

* 수입허구 과부하 및 과실파리유입 우려를 사유로 충청남도산 배를 제외하고는 현재 한국산 농산물의 탄중프럭옥항으로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음

• 축산물

- 가죽제품, 오징어간 분말, 개·고양이 사료, 우모류, 어유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과일류 : 블루베리, 망고
- 채소류 : 마늘, 수박
- 특작류 : 인삼
- 종자류 : 팥, 더덕, 딸기
- 묘목류 : 딸기묘, 알코카시아묘

* 상기 품목 외에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축산물

- 유제품, 가금육, 멸균 식육가공품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MGH(인도네시아)
업체 유형	한인마트
담당자명	Mr. Miftah

- 자사는 현지에서 한국 가공식품의 인기가 높아 라면과 과자를 주로 수입하였으나,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와 Kpop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산 신고배, 샤인머스켓(포도), 감, 딸기 등 일부 신선식품도 수입하고 있음
- 한국산 신선식품 중에서는 포도가 가장 많이 팔렸으며 특히 프리미엄 마켓에서만 판매하는 샤인머스켓은 일본산에 비해 맛과 가격 모두 좋아서 인기가 높음
- 배는 주로 미국이나 중국에서 수입되지만 최근 한국 신고배가 독특한 식감과 맛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딸기의 경우 현지인들에게는 일본산 딸기가 더 익숙하고 한국산 딸기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경쟁에서 밀림
- 과거에는 한국산 인삼도 수입하였으나 판매량이 너무 적어서 더 이상 수입하지 않으며, 인삼차, 종합비타민, 인삼 사탕 등 인삼 가공식품은 수입함
- 인도네시아 고객들이 인삼 효능에 대해 아직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인삼 제품의 가격은 비싼 편이라 구매하지 않는 편이고 인도네시아 자체 허브와 향신료도 유명하기 때문에, 현지산을 선호함
- 샤인머스켓 외에 다른 한국산 포도도 수입할 계획이었으나(특히 Khoyo 포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여전히 포도 수입에 수량제한을 두고 있어서 제약이 있으며, 신선 농산물의 수입 절차가 가공식품보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선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공식품의 수입을 더 선호함
- 한국산 과일은 중국산 과일보다 달아서 주로 중산층에게 인기가 있으며, 프리미엄 과일로 인식되어 그 수요가 한정적임
-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식품 문제는 인도네시아 현지 라면 회사인 M사(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제품 문제로, 지난 10월 해당 업체가 라면에 사용한 고춧가루에서 높은 살충제 함량이 확인되어 문제가 되었고, 싱가포르와 호주에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 바 있음

03 비관세 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인도네시아는 Regulation 42(2019), Regulation 39(2019)등에 근거하여 육류, 식용 내장, 열대과일을 비롯한 농산물에 대해 수입국별로 시장접근 승인제도를 적용함
- 인도네시아는 “향료 첨가물에 관한 2020년 NAFDC 규정 제13호”의 내용을 추가하는 2021년 식품의약품관리청(NAFDC) 규정 제11호를 발표함. 해당 규정에는 향료 보조물질, 합성 향료, 식품 첨가물에 사용이 허용되는 향료 화합물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일부 변경됨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자국 내 통관 항구의 과부하 해소 및 과실파리 유입 방지를 위해 자카르타 인근의 판중프리옥 항구를 폐쇄하고 수라바야 항구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국가안전협정을 통해 과실파리 무발생을 인정받은 국가는 기존 판중프리옥 항구의 통관이 허용되며, 수입검역 간소화 예외조치 혜택을 받음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신선농산물 수출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수출국 식품안전 담당기관의 분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22개 품목을 설정함
 - 수출국 식품안전담당기관은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 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 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의 경우 수출업체는 사전신고서와 분석증명서(COA)를 제출해야 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농업부 법령정보포털	http://jdih.pertanian.go.id/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의약청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page/2/order/2/DESC
오염물질 규정	식품의약청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page/2/order/2/DESC
미생물 규정	식품의약청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page/4/order/2/DESC

통보문 개정현황(2022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

주요 TBT 내용

-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2014년 33호 법률 시행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9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식품과 음료는 5년간의 추가 계도기간을 두고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됨. 하랍 원료가 들어간 품목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2024년 10월 이후 할랄 인증이 없으면 등록이 불가해짐
- 가공식품 라벨링에 관한 2018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1호의 내용을 개정하여 2021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 제20호에 명시함
 - 가공식품의 라벨링 요구사항
 - 재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 요구사항
 - 원료 비율을 포함시키기 위한 요구사항
 - 알코올 함량의 포함시키기 위한 요구사항
 - 소매 판매용 식품 첨가물에 대한 추가 라벨링 요구사항
 - 알레르겐에 대한 설명, 식품 포장과 관련된 문안, 로고 및/또는 사진
 - 가공식품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규정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 국장의 승인하에 라벨에 기재되어야 하는 기타 정보
-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니 식품의약품청(BPOM)에 수입식품 등록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을 강화하여, 2022년 5월 기준 301개 품목을 SNI 강제인증 적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해당 품목은 SNI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통관이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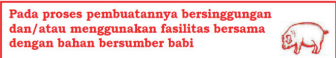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식품의약품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page/2/order/2/DESC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유통기한 • BPOM 등록번호 • 성분 분석표 • 성분 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LAL 로고 (필요한 경우) • 순중량 또는 순용량 • 제조사명 또는 수입자명 및 그 주소 • 제조일 그리고/또는 생산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 유기농, GMO 함유 정보 등 (필요한 경우) • 사용 및 보관방법 • 주의 정보와 사용자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로 표기해야 함	
	그림	라벨의 스티커 작업 후 부착을 허용함	
	유통기한	‘일, 월, 년’ 순으로 작성해야 함 와인, 10% 이상의 일코올을 포함하는 음료, 식초, 설탕(Sucrose), 24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빵 또는 케이크는 제외함	
	BPOM 등록 번호	수입 식품은 ML, 국내 생산 식품은 MD로 표시해야 함	
	성분 분석표	하루 섭취량 정보와 설탕 함량 정보를 표기해야 함	
	성분리스트	식품첨가물의 경우 첨가물이 속한 분류와 첨가물 명을 같이 표기해야 함 (e.g. Antioxidant : Ascorbic acid)	
		인공감미료를 포함하는 경우 인공감미료가 포함되었다는 문구와 그 함량 정보 표기 필요함	
		아스파탐을 포함하는 경우 ‘페닐알라닌을 포함하고 있으며, 페닐케톤뇨증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그리고 ‘가열될 음식에는 적합하지 않음’ 이라고 표기해야 함	
	성분리스트	식용 색소를 함유하는 경우 초록색 박스 안에 ‘PEWARNA PANGAN(Food Coloring)’ 또는 ‘PEWARNA MAKANAN(Food Coloring)’을 표기해야 함	
		식품 첨가물의 표기와 관련하여 ‘Free’, ‘Without’, ‘No Content’와 그 외 기타 유사한 표현에 대해 금지함	
가능한 표기 방법(감미료, 보존료, 착색료, 산화방지제, 조미료에만 사용 가능함) ‘특정 식품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Without certain food additives)’ ‘인공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Do not contain artificial sweeteners)’			
폴리올을 포함하는 경우 ‘과도한 섭취는 설사 증상 등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표기해야 함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HALAL	로고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야 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함
		수입 제품의 경우 Foreign Halal Certifying Body(FHCB)의 인증을 받아야 함
		신HALAL 인증법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4년 10월 17까지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식음료는 그림, 기호, 글자로 제품 내외부에 비HALAL 표기를 해야 함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제외한 비HALAL 성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색과 형태로 된 성분 분석표를 추가해야 함
	기타	방사선에 노출된 식품의 경우 'IRADIASI(Irradiated)' 표기와 함께 로고 부착 필요. 시설의 주소, 연월, 국가 정보 및 조제 과정 정보를 포함해야 함
		방사선의 재조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TIDAK BOLEH DIRADIASI ULANG(Not to be re-irradiated)'라고 표기해야 함
		가공식품 및 즉석식품에 대해 설탕, 소금, 지방에 대한 함유 정보와 건강에 대한 문구의 표기가 필요함 ¹⁾
	돼지고기 관련	GMO 원료를 5% 이상 포함하는 경우 'PRODUK REKAYASA GENETIK(Genetically engineered product)'라고 표기해야 함
		돼지고기 함유 표시는 붉은 네모칸에 붉은 글씨로 돼지의 그림과 함께 표시해야 함 
		식재료 과정의 돼지와 연관된 식품 접촉은 붉은 네모칸에 붉은 글씨로 돼지 그림과 함께 표시해야 함 
주의 정보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해야 함 - 글로텐 - 조개류 - 달걀 - 생선 - 땅콩 - 대두 - 우유 - 락토스 - 견과류 - 아황산염	

* 자료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USDA FAS)

1) e.g. 1인이 하루에 50g 이상의 설탕, 2,000mg의 소금 또는 67g의 지방을 섭취할 경우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Sodium 67g of fat per person per day increase the risk of hypertension, stroke, diabetes, and heart attack)

● 비스킷 / 쿠키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파인애플 잼 우유 과자	
원재료명	- 밀가루 - 식물성 기름 - 백설탕 - 포도당 - 과당 - 파인애플 푸레 - 분유 - 소금 - 콩 레시팅 - 산도조절제 - 탄산칼슘 - 향미 물질 - 합성 색상 - 비타민 - 캐러멜	
내용량	32g	
출시일(발행일)	2022. 09. 21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Mayora Indah	
알레르겐 주의 성분	우유, 밀, 글루텐 함유 시리얼	
영양성분 정보	- 1회 제공량 24g	
	- 총 제공량 13.50	
	열량(Kcal)	110kcal
	지방	3.5g
	포화 지방산	1.5g
	단백질	1g
	탄수화물	18g
당류	6g	
나트륨	50mg	

● 액상 발효유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보라색 타로 향 요거트 음료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 백설탕 - 크림 분유 - 탈지분유 - 안정제 - 토란 추출물 - 타로 향료 - 천연 색소 	
내용량	120g	
출시일(발행일)	2021. 11. 30	
저장방법	냉장 보관	
제조사	Cisarua Mountain Dairy	
알레르겐 주의 성분	우유	
영양성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제공량 70g당 - 총 제공량 2회 	
	열량(Kcal)	70kcal
	지방	2g
	단백질	3g
	포화지방	1.5g
	탄수화물	11g
	당류	8g
	나트륨	35mg

인증

[필수 인증]

• 인도네시아 BPOM 등록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의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을 감지, 예방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및 식품관리 인증 시스템을 도입함.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해당 등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에 대해 필수적으로 등록을 요구함. 수입업체 또는 현지법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현지법인이 없는 국내기업의 경우 등록이 제한됨

인증명	인도네시아 BPOM 등록	
발행 및 검사기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등록신청서, 수입업자의 법률 문서, 보관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제조업체 품질관리 인증서, 자유판매증명서, 건강증명서, 위축장, 성분 구성정보, 제조공정, 제품 저장 정보, 생산 코드 정보, 레이블 디자인, 완제품 분석 인증서	
비용	-	
소요기간	약 3~6개월	
절차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수수료 지불 → 제품번호 통보 → 심사 → 인증 승인 및 등록번호 부여	


•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

- SNI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임. 전자기기, 의료기기, 기타 공산품, 가공식품 등에 요구되는 인도네시아의 인증제도임. 강제대상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은 반드시 지정인증기관을 통해 SNI 인증서를 발급받고 제품에 마크를 표시해야만 인도네시아로 수입/판매가 가능하며, 인증서는 최대 4년간 유효함

인증명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	
발행 및 검사기관	인도네시아 산업부(MIT) 지정 시험소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상표등록증, 카탈로그 원본, 사용	
비용	5,500 ~ 25,000 USD	
소요기간	최대 3개월	
절차	신청 접수 → 공장 심사 → 샘플 검사 → 승인 및 인증발급	


• HALAL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4년 발표한 법률(No. 33/2014)이 지난 10월부로 발효됨에 따라 식품, 음료, 화장품 등의 품목에 할랄 인증이 필수 취득 사항으로 되었음. 인도네시아 이슬람 할랄 위원회(LPPOM MUI)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보증기구(BPJPH)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 다만, 식품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오는 2024년 10월까지의 할랄 인증 획득을 완료해야 함. 인도네시아 이슬람 할랄 위원회는 인도네시아와 아시아, 유럽 등지에 위치한 45개의 할랄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통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음

인증명	HALAL	
발행 및 검사기관	LPPOM MUI 또는 지정인증 기관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 도축장 정보(필요한 경우), HAS 매뉴얼, 가공 공정도, 가공 공장 주소, 사내 할랄 교육에 대한 정보, 할랄 인증 신청서	
비용	20~50만 원	
소요기간	1~2개월	
절차	서류제출 → 인증수행계약 체결 → 사전 모니터링 → 현장조사 → 인증서 발급	

• HACCP


- HACCP 인증은 농축산물 및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제도임.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HACCP, ISO 22000, GMP 인증 3가지 중 1개 이상 취득이 필수임

인증명	HACCP(품질안전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계획서 등	
비용	20만 원	
소요기간	약 4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심사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발급	

[선택 인증]

- ISO 22000(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ISO 22000 인증은 식품의 가공업체, 유통업체 모두에 적용되는 최종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표준임. 해당 표준은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인증명	ISO 22000	
발행 및 검사기관	ISO 등록 시험 기관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인증심사 신청서	
비용	투입 심사관의 노동량 기준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심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	
절차	서류제출 → 인증계약 → 계획통보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시정조치 → 인증심의 → 인증취득 → 사후관리심사 → 갱신심사	

- IFS Global Markets Food

- IFS Global Markets Food 인증은 식품 유통업체를 위한 인증으로, 식품의 제조와 유통, 관리 등 최종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평가 인증임. 유사 인증인 IFS Food 인증은 식품 가공업체를 위한 인증으로, 식품 가공 및 제조 과정과 완제품 최종 포장 과정까지의 안전을 평가하는 인증임

인증명	IFS	
발행 및 검사기관	IFS 지정 인증기관	
강제 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비용	약 900 ~ 1,000만 원	
소요기간	약 24주	
절차	인증 신청 → 사전 심사 → 현장 심사 → 부적합 사항 시정 조치 → 인증 발급	

No.	제목	할랄 인증 의무화되거나 인증 취득의 까다로움	해당국가	인도네시아
			관련품목	식품전반
			유형*	TBT
1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신할랄법의 시행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은 할랄 인증 적용이 의무화되며, 제품에 따른 단계적 시행 정책에 따라 식품에는 2024년 10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의무 적용됨 신할랄법에 따라 할랄인증청(BPJPH)의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할랄인증청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해 할랄 검사를 수행해야 함 할랄 인증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주체 : 수출사(브랜드 보유자) 또는 제품의 제조(생산)사 - 심사 대상 : 제품의 제조 시설 공장 - 신청 방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https://ptsp.halal.go.id/ 접수 ② 할랄 인증 심사 기관 선택(LPPOM MUI(국내외), Sucofindo(국내), Surveyor Indonesia(국내) 등 3개 기관 중) ③ 할랄 인증 심사 기관에서 할랄 신청 기업 실사 후, 합격 시 교부 - 획득 소요 기간 : 21~41일(서류 및 할랄 제품 공정에 문제없는 경우) - 획득 소요 비용 : USD 13,000~20,000(심사 공정 및 제품 유형별로 상이) - 유효기간 : 4년 - 타국 인증 상호인정 여부 : 인정 추진 중 (*현재 한국이슬람교할랄위원회와 BPJPH 사이 교차 인증은 불가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랄 의무 규정에 따라 생산공장 재설립 또는 현지 공장, 지사 설립 등 이외에 타개할 방법이 없어 수출에 많은 제약이 생김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할랄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 할랄 인증이 필요하나, 인증받기가 까다로움 		
	기타	<p>※ 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 도입</p> <p>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9600&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p>		

No.	제목	2-클로로에탄올과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 강화	해당국가	인도네시아
			관련품목	라면
			유형*	SPS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처는 인도네시아 식품 중 즉석 라면의 조미료, 즉석 라면에서 기준치 이상의 2-CE(클로로에탄올)와 ETO(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령 43호 규정》의 2-CE와 ETO 검출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함 국제 기준에 따라 강화된 인도네시아 2-CE 및 ETO 검출 기준 		
	분류	2-CE(클로로에탄올)	ETO(에틸렌옥사이드)
	대상 품목	아이스크림, 채소/해초/콩/깨, 면류(파스타, 라면 등), 약초 및 향신료	아이스크림, 채소/해초/콩/깨, 면류(파스타, 라면 등), 약초 및 향신료(고춧가루)
	최대 허용치	85mg/kg	0.01mg/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조치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식품에 적용되는 개정사항이지만, 인도네시아 내 유통 식품도 동일한 기준치가 적용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CR / ETO 규정 강화로 수프 생산 후 검사, 완제품 생산 후 재검사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및 수출품목 확대에 애로사항이 있음(기준 10여 개 수출 제품을 4개로 축소하여 운영 중임) 		
기타	<p>※ 인도네시아, 2-클로로에탄올과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 강화</p> <p>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961&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2&srchWord=%EC%9D%B8%EB%8F%84%EB%84%A4%EC%8B%9C%EC%95%84&page=1&srchGubun=75</p>		

No.	제목	홍삼제품 통관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	해당국가	인도네시아
3			관련품목	홍삼제품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는 전통의약품 원료로 지정된 재료가 사용될 경우 보편적으로 전통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의약품 원료 : 홍삼, 인삼, 당귀, 천궁, 작약, 지황, 동충하초 등 • 전통의약품은 알코올 잔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알코올은 최대 5% 사용이 허용되어 있으나 그 이상의 알코올 함량이 나올 경우, 해당 사항을 제품에 라벨링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검사에서 Negative로 나올 경우, 그 검사의 유효 조작 범위 LOD(Limited of Detection)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 • 전통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홍삼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인증 및 할랄 인증취득이 필수임. 또한,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농식품 수입 기준 법률에 따른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 인증 신청 절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BPOM 온라인 시스템 수입사 등록 ② GMP 사본의 공증 제출 후 제조사 온라인 등록 ③ 개별 제품의 등록 접수 신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기능성, 제품의 재료, 제조의 관리와 제조 기술 안정성에 관련된 검증 자료 요구 및 검사 ⑤ 제품의 포장 디자인 심사 - 식약청 인증 구비서류는 인도네시아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애로·건의 사항		홍삼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내에서 전통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준비 및 진행에 어려움이 큼. 특히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진행하는 데 2~3년의 시간이 소요됨		
기타		-		

1. 홍삼 스틱 제품

제품 사전검토 결과

• 식약청 등록 유형

No.	등록 기관	등록 유형	비고
01	BPOM(식약청)	SI ²⁾	-

• 전 성분 조사 설명

- 전 성분의 홍삼 추출물(extract)과 홍삼 파우더를 재료로 사용할 때에는 건기식 및 식품 유형 모두 사용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인니 식약청에서는 인삼류의 사용을 Panax Ginseng C.A Meyer and Panax Quinquifolius- American Ginseng(Ekstrak Ginseng)만 허용하고 있음. 다만 한국의 인삼류는 모두 Panax Ginseng C.A Meyer 종임으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인삼 종의 표기를 포함한 제품사향서의 준비가 필요함
- Fructo-Oligosaccharide의 경우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가공 식품 등에 자유로이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인니에서도 본 재료 자체는 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홍삼 제품에 Fructo-Oligosaccharide 첨가 시 인니 미 등록 구성 사례로 인니 식약청의 안정평가표준 관리국의 심의 후 확인서를 받아 제품 등록 신청 및 심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음
- 인삼 열매, 진생베리는 식품류와 건강기능식품 및 전통의약품으로 허용된 재료이지만, 인니 BPOM에는 미등록된 재료이므로 사용할 수 없음.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재료의 사용이 식약청의 안정평가 심사국(SPO)에 별도 재료 사용 승인 절차 등록 후 사용 가능
- 건기식의 경우 제조사의 GMP 인증은 필수 사항임. 그리고 active(활성) 재료와 부형제 재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활성 재료는 안정성 보고서 등이 요구됨
- 전통의약품으로 구분 적용 시 프락토올리고당의 첨가는 신규 배합으로 지정되어 심사에 별도 추가 안정성 평가국의 심의가 필요하나 아민류 등의 혼합으로 본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등록 시 프락토올리고당의 혼합 사례가 있어 등록 허가 진행에 비교적 유리할 수 있음
- Fermented라는 발효 홍삼 추출방법으로 발효의 유무를 구분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아 현재 발효 관련 사항의 재료명은 '일반적인 홍삼추출물'로 기재하여 신고 필요

2) SI(Supplement impor)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급으로 허브 재료와 함께 비타민류 등이 복합 재료의 제품

- 제품의 전 성분표 작성 기준(건강기능식품 기준으로 적용 준비 시 참고사항)

- 전 성분표는 활성(Active)/부형제(Excipient) 재료로 구분되어야 하며 그 기능성 또는 용도를 함께 표기해야 함. 또한, OTSM 등급에서는 제조 시 1lot(또는 Batch) 대한 제조량의 기재와 함께 사용량 % 기재가 필요함
- OTSM 등록 신청 시의 전 성분표 작성 기본 요구사항 : 기본 타입으로 형식 변경 가능
- 일반 가공식품 등록 시에는 전 성분 및 함량 표기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건강기능식품 경우 구분 표기 필수

- 완제품 의무 시험 성적서 검사 유의사항

- 건강기능식품 등록 대상 중 액상 제품의 재료에 대한 생산 공정 및 완제품의 생산 공정상 알코올 보조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잔류 알코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잔류 알코올이 0.01% 이상 경의 해당 검사 결과를 제품 포장에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됨
- Napza(Napza is an acronym for Narcotics, Psychotropics and Other Addictive Substances. Other terms that are often used are drugs and psychoactive substances) 약자 표기로 전통의약품의 경우 전 성분의 구성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잔류검사 대상임

- 주의 참고사항

- 본 제품의 전 성분 구성 중 한국에서는 부형제를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나 인니 기준 활성 재료에 해당되는 성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 자료 입증 요구가 많이 나올 수 있음. 또한, 인니 허용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재료의 구성 배합이 인니 신규 구성일 경우 식약청의 안정성 평가 심사국에 등록하기 이전에 사전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규 배합 구성의 경우 식약청의 사전 확인은 불가하며, 신청 접수 또는 공식 상담 자료 제출 시 확인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안정성 평가국의 해당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할 연구 자료 및 근거 논문 자료, 독성 검사 자료, 유효성에 대한 근거 자료, 다른 국가의 등록 사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며, 심사평가에 따라 추가 자료들의 요구를 받아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섭취에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근거를 등록 신청사에서 소명되어야 함
- 본 제품은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홍삼과 마카, 프락토올리고당으로 구성된 다른 제품의 사례가 있는지 등에 따라 제품 심사 진행 시 추가적으로 논문 또는 시험보고서 등이 요구될 수 있음. 진생베리의 경우 미사용 사례 제품에서 제외하는 것이 통관 진행 시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인도네시아 라벨링 제도 중요 정보 안내 사항

-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농수산물식품의 할랄 인증 의무화
 - 인도네시아 MUI 할랄인증 의무화법 시행으로 식품과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농가·수산·가공 기업은 현지 기관을 통해 MUI 할랄 인증을 획득하거나 교차 인증대상 할랄을 신청해야 함
 - * 국내 적용 교차 인증기관 미지정 - 추후 교차 인증 지정 시 국내 인증기관에 신청 가능
 - 2019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적용을 유예기간을 추가하여 2024년 10월 17일부터 적용
 -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보장청에서 할랄 인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 할랄 접수처 BPJPH(종교부-할랄인증보장청) - 할랄 인증 심사 LPPOM MUI(BPJPH 할랄 접수 등록 확인서 필수 제출 필요)
 - *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부터 MUI 할랄 인증 의무화 적용

2. 소스류

제품 사전검토 결과

• 식약처 등록 유형

No.	등록 기관	등록 유형	비고
01	BPOM(식약청)	ML	(-)

- 본 제품은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등록 시 만두/파스텔/스프링 롤 등의 유형에 포함되어 Saus Bumbu(564)의 타입에 적용되며, Saua Bambu Non-Emulsi Lainnya(120602222)카테고리로 등록 가능

• 식약청 제출 서류(일반 가공식품 기준)

-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원본 발급요청 후 출력물 원본을 제출
- 임명서(LOA Letter of Appointment) : 한글, 영문본 준비하여 법무법인 번역 공증 후 영사과 공증
- 제품 성분 함량표(Ingredients in percent) : 영문 작성
- 각 재료에 대한 제품 규격서(Specification) : 필요에 따라 재료의 시험 성적서 요청(제품 규격서 대신 COA 재료 시험 성적서 제출 가능)
- 제조 공정도 : 제품별 공정의 단계적 차트 - 회사에서 사용하는 작업 지시서의 개념이 아님
- 완제품(등록 제품)의 제품 규격서 : 제조사 자가 시험 성적서
- 완제품의 시험 성적서(COA) : 미생물 5, 중금속 4 사항을 제품별 재확인(공인 성적서)
- 포장 재료의 규격서(Specification)
- 유효기간 설명서 : 제품의 유효기간 설정 사유와 표기에 대한 설명
- Batch No. 또는 LOT No.의 표기 설명서 : 번호 구성에 대한 설명 포함된 자료
- 제품의 사용법(조리법) : 국문 및 영문 자료 준비하여 모두 인도네시아어 번역 제출 의무
- 제품의 포장 디자인(컬러판 평면도) 한글 포장 제품의 경우 한글의 인도네시아어 번역 공증 필요
- 포장 라벨링 표기사항 : 유통에 표기될 사항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어 작성 제출
- 샘플 3~5개(BPOM의 확인 요청 시 방문 제출 및 시험 검사용)
- 기타 인증서 사본(HACCP, ISO 등) : HACCP 또는 ISO22000의 사본 필수(공증 불필요)

- 주요 준비서류의 주의 사항
 - 자유판매증명서는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전통의약품) 포함하여 현재 공증 없이 한국의 지방 식약처에 온라인 발급된 전자문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 영사과 공증 불필요함
 - LOA는 영사과의 공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건으로 공증 발행 이전 문안 내용상의 제품에 대한 표기사항과 위임 업무 사항에 대한 표기 등 표현상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 후 공증 처리에 주의 필요
 - 완제품의 시험 성적서는 제조사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도 필수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외부 시험기관으로부터 미생물 및 중금속의 시험검사를 받아 그 성적서(공인기관)를 제출해야 함. 현재 한국의 시험 검사법의 기준 표기 방식이 일부 차이가 있어 가급적 인니의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받는 것이 유리함
 - 일반 가공식품, 기타 가공식품, 수산 가공식품 등 모든 식품은 제조사에서 GMP / HACCP / ISO22000 중 1택 필수적으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전 성분 사용 재료의 모든 재료는 Specification(규격서-사양서)를 필수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식품류의 경우 원재료의 제조사가 아닌 완제품 제조사의 헤드레터 사용으로 제출 가능)

- 제품의 성분 검토
 - 인도네시아 식약청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의 전 성분 재료 사용 함량에 따른 최대 허용치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가공식품과 건강보조식품에 따른 기준과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식약청 기준에 충족하도록 필히 사전 확인과 준비가 필요함
 - 가공식품의 등급으로 진행 시에는 재료(첨가물)에 따라 허용 기준치에 적합한지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국제 식품규격인 CODEX 규정을 참고하여 확인이 가능함

3. 스낵류

제품 사전검토 결과

• 식약처 등록 유형

No.	등록 기관	등록 유형	비고
01	BPOM(식약처)	ML	-

- 본 제품은 인도네시아 식약처의 등록 시 일반 가공식품 제품 Makanan Ringan Ekstrudat(737)의 타입에 적용되며, Makanan Ringan Ekstrudat(압축 스낵)(150129) 카테고리 등록 가능

• 식약처 유기농 표기 사항

-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에서는 해외 제조 유기농 제품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포장 라벨링 표기 심사 시에 인도네시아 유기농 인증서가 없을 시 해당 제품명에서 organic(유기농) 한글 및 영문 표기 삭제, 그리고 로고 사용의 삭제 및 대표 원재료 표기에 대한 부분도 모두 유기농 부분을 삭제 조건으로 가공식품 등록 기준 충족 시 허가 등록을 승인함. 해당 제품은 인도네시아 식약처 등록 시 일반 가공식품 제품 Makanan Ringan Ekstrudat(737)의 타입에 적용되며, Makanan Ringan Ekstrudat(압축 스낵)(150129) 카테고리 등록 가능

• 유기농 인증 서류 준비사항

- 제조사의 품질관리 및 표준 운영 시스템 SOP 매뉴얼(보편적 ISO22000 또는 HACCP의 SOP 준비 제출 필요)
- 유기농 시스템에 대한 SOP
- 전 성분표
- 제조사 국가(한국) 유기농 인증서 사본
- CFS 사본
- 사업자등록증 영문 사본
- 제품 공정도
- 원재료 유기농 근거 서류(재료 SPEC 및 유기농 확인서)
- 품질관리 책임자의 영문 이력서(경력사항 포함)
- 인증 신청서

- 심사 절차 사항 및 비용
 - ①인증 신청서류 제출 접수 → ②구비서류 요건 검토 및 충족 시 비용청구서 발행 → ③ 신청사 비용 납부 → ④ 서류 본 심사 → ⑤ 추가 요구사항 또는 심사 완료 → ⑥ 인증서 발급 (3년 유효)
 - 비용 평균 Rp.15,000,000 ~20,000,000(KRW 1,500,000~2,000,000) : 인증 품목 수 등을 기준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인보이스 발행 및 납부 후 심사 진행(onsite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여행 및 체류 재경비 신청사 부담)

- 특이사항
 - 유기농 인증서 발급 시 유효기간은 3년이나, 매해 공장 실사를 진행하지 않는 인증기관의 경우 서류 갱신사항을 점검 및 심사하며, 공장 실사가 포함된 심사를 시행하는 인증기관은 매년 현장 실사를 진행함(이때 현장 실사와 관련된 항공비 및 재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함)

- 인도네시아 VEGAN 로고 사용 절차
 - 인도네시아 BPOM의 Vegan 로고 사용에는 해당 인증서(국내외 모두 가능) 사본 그리고 DNA 동물성 미검출 검사 증명서 제출 필수이며, 조건 충족 시 Vegan 표기 사용이 가능함
 - DNA 검사서는 해외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사용 가능
 - 전 성분 사용 재료의 모든 재료는 Specification(규격서- 사양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식품류의 경우 원재료의 제조사가 아닌 완제품 제조사의 헤드레터 사용으로 제출 가능)

● 일반 가공식품의 라벨링 표기 의무 사항

- 수입 및 유통 인도네시아어 표기 의무 사항(식약청 표기사항 사전 심의 및 제품 등록·허가 필요)

No	Indonesia 표기	설명	비고
1	Product Type(제품유형명)	제품의 유형만 표기 또는 제품의 유형과 제품명을 병행 표기 가능	
2	komposisi(전 성분)	전 성분 표기로 함량이 높은 순으로 기재 인니어로 표기	
3	Diimpor oleh(수입사)	수입사 명 및 주소 표기	
4	Diproduksi oleh(제조사)	제조사의 명 및 주소 표기	
5	Berat Bersih(용량, Net)	제품의 내용물 용량(포장구성)	
6	BPOM RI ML(등록허가번호)	BPOM의 등록 허가 번호 기입	QR 코드 의무표기
7	Kode Produksi(제조 Lot)	제조 Lot를 직접 표기 또는 제품 포장에 별도 인쇄식으로 기재	
8	Baik digunakan sebelum	Best before로 유통기간 표기를 직접 라벨 표기 또는 별도 인쇄 참조로 가능	
9	Pentunjuk Penyajian	음용법 또는 제조 방법 표기	
*	Mengandungn alkohol	음료 제품 또는 알코올 포함 재료 사용 시 알코올 잔류 검사 의무 대상에 따른 표기 의무	± 0.01% 이상 의무 표기

● 일반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검사 의무표기 안내

[영양성분 의무 검사]

- 인도네시아 지정 시험검사 기관에서 검사 성적서 필요

No	Parameter Test(Ind)	Parameter Test(Eng)	Max Limit	Intake per serving
1	Lemak total	Total Fat	67g / day	< 18g
2	Energi / Kalori	Calories	2150 kcal / day	
3	Protein	Protein	60g / day	
4	Karbohidrat total	Total Carbohydrate	325g / day	
5	Lemak Jenuh	Saturated Fat	20g / day	
6	Garam	Natrium	1500mg / day	< 300mg
7	Gula	Sugar	-	-